

# 大韓電氣協會의 發足經緯와 創立精神

大韓電氣協會 副會長 · 大韓電氣學會 會長

李 宗 日

< 1 >

數年前부터 電氣會館 建立問題가 電氣人們 間에  
個別的 또는 散發的으로 提唱되고 論議되어 왔었다.  
藝總會館이나 建設會館 等과 같이 電氣會館을 建立  
하여 電氣人 및 電氣關聯團體의 共同集合所로서 利  
用하자는 것이다. 昨年 여름 大韓電氣工事協會의 當  
時 理事長이었던 李嘉永氏와 同 協會 專務理事이었던  
李京馥氏 等이 主動이 되어 電氣會館建立推進委員會  
를 만들어 電氣에 關聯있는 廣範圍한 各 團體,  
業體 및 電氣人们的贊成捺印을 받았으나 이를 如  
何히 推進시키고 實現시키느냐가 問題였다. 即 出發  
精神과 慾望은 좋았으나 莫上 具體的事業에着手  
하여 첫 段階로 全地選定問題에 들어가 보니 法  
的 및 財政的根據 없는 電氣會館建立推進委員會로  
서는 困難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마침 韓國電  
力株式會社의 朴英俊 社長이 昨年에 日本 東京에서  
日本電氣協會主催로 舉行된 「電氣의 날」行事(에디  
슨誕生日記念 祝賀行事)를 보고 그 規模가 大端히  
盛大하고 行事が 有益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우리도  
그런 電氣協會의 機構를 만들어 國際的인 紐帶를 맺  
어보자는 提議가 있었다. 여기서 法定團體인 社團法  
人을 設立하자는 意見으로 統合되고 이것이 本 電氣  
協會의 出發動機가 된 것이다. 이를 契機로 大韓電  
氣協會創立에 對한 構想을 大韓電氣學會에서 담겨  
되어 案을 作成하기에 이르렀다.

< 2 >

大韓電氣學會에서는 常任理事會와 理事會를 數次  
開催하여 그 必要性과 電氣協會에의 參加與否를 檢  
討하였다. 電氣人的集合體인 電氣協會創立 趨旨  
에 對하여서는 反對가 없었으나 電氣學會가 直接 加

入한다는에 對해서는 若干 異議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現在의 時點이 電氣界의 初創期에 該當  
한다고 보았고 電氣界 全體로서 하여야 할 여러 가지  
緊急 重要事業 等을 考慮하여 全體 電氣人 및 團體  
가 合作하는에 意見의 合致를 보게 된 것이다. 特  
히 여기서 話及해 두고 싶은 것은 大韓電子工學會  
와의 連結이다. 既往 大同團結하는 바에는 같은 學  
會團體로서 強電 弱電을 網羅하자는 意見이 나와 大  
韓電子工學會側에 提議해 보았더니 欣然 贊成하  
로 이에 同步調査를 取하게 된 것이다.

電氣에 關한 政策, 運營, 技術, 其他 全般에 亘  
하여 우리나라는 外國의 것을 大部分 그대로 吸收  
한 것이 많기 때문에 電氣協會에 關하여도 外國에  
있는 이와 비슷한 團體의 定款을 參考로 하고 現在  
國內 最大 業體인 韓國電力株式會社側과 數次 意  
見을 交換하여 成案된 것이 今年 3月 15日 發起人總  
會에 提出되어 多少의 修正 끝에 3月 26日 最終의  
로 本 協會創立總會에 上程 通過し, 보게 된 大韓  
電氣協會 定款인 것이다.

< 3 >

定款 第9條에 「本 協會의 會員은 다음 各號의 事  
業을 營爲하는 者와 이에 從事하는 者, 電氣에 關한  
學術經驗이 있는 者 및 이들이 所屬된 團體로 한다.

1. 電氣事業
2. 電氣 機械 器具 材料 製造業
3. 電氣工事業
4. 電氣鐵道事業 및 電氣軌道事業
5. 電氣化學事業
6. 其他 電氣를 使用하는 事業」

으로 되어 있어 個人 및 團體가 加入할 수 있으며  
다시 이를 明示하기 為하여 同 第10條에 「本 協會

의 회원은 正會員 特別會員 및 名譽會員으로 区分한다, 同 第11條「正會員은 第9條 各號의 事業에從事하는 者 및 電氣에 關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로서 個人名으로 申請한 者로 한다」, 同第12條「特別會員은 前條에 提示한 者들의 所屬團體名 또는 業體名으로 申請한 者로 한다」로 区分되어 놓았다. 即 우리 電氣協會의 構成會員은 二元制를 擇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個人으로 볼 때에는 正會員으로 加入되어 있음과 同時に 所屬 業體나 團體가 特別會員으로도 加入하게 되어 重複되는 感도 있으나 全體電氣人의 總合體構成을 目標로 規定을 作成하다 보니 不可避하게 이렇게 된 것이다.

個人名으로 加入하는 正會員과 業體나 團體名으로 加入하는 特別會員 間의 關聯條項이 定款에 있으니 即 定款 第13條 「(1) 特別會員으로서 會費 30,000원 以上을 納付한 者는 正會員으로 入會할 者를 推薦할 수 있다. (2) 前項에 依하여 推薦할 수 있는 者의 數는 會費 30,000원 當 1名으로 하되 20名을 超過할 수 없다」가 그것이다. 이 條項은 우리 電氣協會 定款의 가장 獨特하고 妙味있는 部分이다. 即 財政의 으로 多額의 會費를 納付할 수 있는 본業體나 團體는 그만큼 우리 電業界에서 比重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協會에 더 많은 正會員을 參加시켜 그 意見을反映시키고 積極의 으로 協會運營에 參與하자는 意圖이다. 이렇게 하여 入會하는 正會員은 定款 第17條 (2)項 「第13條의 規定에 依하여 推薦되어 入會한 正會員의 會費는 이를 免除할 수 있다」로 會費 負擔을 免除한다. 그러나 1個 特別會員에게 無制限 正會員 推薦을 許容함으로써 一人肥大의 結果가 招來될 것을 防止하기 爲하여 推薦人數를 20人 以下로 制限한 것이다.

그 反面 財政의 으로 特히 微弱한 團體들도 널리 參加시키기 爲하여 定款 第17條 (3)項 「特別會員의 會費는 每 事業年度當 10,000원 以上으로 하되...」로 하여 年間 會費 10,000원으로 特別會員 加入의 門을 開放해 놓았다.

至于 學會와의 關係를 特別히 規定한 部分이 있으니 定款 第13條 (3)項 「特別會員中 學會에 限하여 5人 以內의 正會員을 推薦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現在 存在하는 몇개의 電氣關係 學會는 모두 財政의 으로 貧弱하여 學會 本然의 正常의 活動을 못하고 있는 形便이다. 政府補助는 한 푼도 없고 會員들의 僅少한 會費와 篤志家들의 特別協助

에 依한 事業維持費로써 겨우 命脈을 維持하고 있는 形便이다. 그래서 年間 會費 10,000원으로 參加할 수 있게 하는 同時に 學者會員의 加入의 길을 最大限으로 터주기 爲하여, 또는 이 나라의 學者들을 待遇한다는 意味에서 이런 規定을 반든 것이다.

이렇게 하여 各界 各層의 全體 電氣人을 總網羅한 團體를 만들기로 한 것이 本 協會의 創立精神이라 하겠으며 現在 이러한 趨旨下에 圓滿히 協會가 運營되고 있는 것이다.

#### < 4 >

大韓電氣協會에 加入한 各 團體는 각各 獨立性을 가진 獨自의 機關인 同時に 本 協會와는 有機의 으로 連結되어 있다. 따라서 本 協會와 本 協會를 構成하고 있는 各 團體와의 關係는 縱的인 上下關係라느니 보다는 橫的 聯合體인 UN의 性格과 비슷하다고 보겠다.

本 協會의 事業種目(定款 第4條)을 보면 加入 團體들의 事業 種目을 다시 羅列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 點에 對해서는 起草 當時 또는 創立準備委員會 때부터 여러 차례 論議된 것으로서 結論의 으로 말하면 本 協會의 使命은 加入團體가 各己 專門의 으로 營為하는 事業이나 할 수 있는 事業은 노 오탁취하기로 하고 一個 團體나 業體로서는到底히 할 수 없는 事業, 또는 全體 電氣界에亘하여 共通된 事業, 電氣協會 名儀로써 하면 越等한 効果를 낼 수 있는 事業, 各 團體相互間의 利害가 相反되는 일의 解決 等에 있는 것이다. 即 本 協會와 奉下各 團體와의 事業面에서의 關係는 어디까지나 相扶相助하고 大同團體로써 進一步한 共榮의 길을 걷자는 데 그 本義가 있는 것이다. 一例로서 今般 發刊하게 된 本 「電氣協會誌」의 內容을 보면 알 수 있드시奉下 團體에서 나오는 會誌(例: 大韓電氣學會 發行 「電氣學會誌」, 大韓電子工學會 發行 「電子工學會誌」)와 重疊되지 않도록 編輯方針이 決定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學術에 關한 研究 分野는 各 學會誌에 넘기고 技術 및 經營 等에 關한 內外의 消息, 會員 相互間의 動靜 等 所謂 會報의 性格을 가지도록 常任理事會에 「電氣協會誌」의 性格을 規定한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 電氣協會는 그 基本精神을 定款 起草 當時부터 全體 電氣人을 總包攝하는 데 둔 것이니만큼 幅이 넓고 融通性이 있도록 定款이 만들어져 있다. 即 앞으로 如何히 發展되어

나잘 것인지 正確히豫測하기는 困難하므로 너무細分된 事前 規定을 避하는 것이 上策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定款 全體를 볼 때若干 模糊한 感을 주는 結果가 된 것을 否認할 수 없다. 생각컨대 國體運營은 形式的인 規定보다 이에 參與하는 人士들의 協助精神과 運營의 妙가 오히려 成敗를 左右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各 部門의 電氣人를 總包攝하였으므로 本 協會에 對한 各 會員의 協力 方法은 會員各者の 立場에 따라 自然히 달려질 것이다. 即 財政的 餘裕가 있는 人士는 財政面으로, 行政的 能力이 있는 人士는 行政面에서, 學識이 있는 人士는 學理的 奉仕를 通하여 各各 協力하여야 할 것이다.

本 協會를 運營하는 體系는 集團指導制인 合議制를 採擇하였으며 會議의 種類는 總會, 理事會 및 常任理事會의 3種類로 되어 있는데 總會는 最高機關으로서 定款의 制定 및 變更, 本 協會 運營의 中樞機關인 理事會를 構成할 理事의 選出, 豫算編成과 決算承認 등 가장 基本의이고 重要한 案件을 處理한다. 理事會는 會務 途行에 있어서 會員을 代議하는 機關으로서 會長 및 副會長을 選出하고 重要 會務를 審議 議決한다. 常任理事會는 執行機關으로서 本會의 會務을 總括하는 會長이 理事 中에서 推薦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받은 者로써 構成되고 적어도 月 1回以上 會合하여 常時 會務를 보도록 되어 있다. 即 모든 運營의 責任은 各種 會議가 가지기로 하였다. 但 定款 第2條 (2)項에 「事務所에는 本 協會의 會務를 處理하기 為하여 事務局을 두며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若干名의 事務職員을 둘 수 있다」로 되어 會長 直屬으로 事務局이 設置되어 있는 것이다.

### < 5 >

本 協會의 當面 事業으로서는 設立精神 即 한마디로 表現하여 全體 電氣人の 大同團結의 實을 거두기 為하여 于先「團結의 場所」로서의 「電氣會館」의 建立이 最大 急先務라 하겠다. 始初에 電氣會館 建立準備委員會가 생겨서 그것이 本 協會 發足의 契機가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거니와 事實 우리 電氣人們의 本 協會에 對한 關心과 興味의 본部 分이 電氣會館 建立問題일 것이다. 電氣會館이 建立되어 모든 電氣關係 團體들이 一堂에 集合され면 自然 接觸할 機會가 많아져서 相互 理解와 親睦

이 이루어질 것이며 建設的인 意見도 造成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有名無實한 團體가 泛濫하는 이 社會에서 純淨한 會館이 서울 西班에 建立된다면 無言中에 本 協會에 對한 社會的 信賴와 期待가 커져서 本 協會 發展의 첫 段階가 마련될 것이다. 他 部門에서 이루어진 事業이 電氣部門에서만은 안 될 理由는 없을 것이다. 正會員 및 特別會員을 莫論하고 热과 誠으로서 本 協會에 積極 協力하여 하루速히 會館 建工의 날이 오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電氣의 날”的 制定도 우리 電氣人們이 解放以後 渴望해오면 바이며 全體 電氣人の 集合體인 우리 電氣協會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電氣의 날”은 本 協會에서 이미 當局에 4月 10日로 定할 것을 建議하였고 一部 行事計劃이 進行中에 있다. 電氣會館 建立이 先行하여 着工되면 具體적으로 積極推進시켜 每年 全國的인 行事로서 全國民에게 電氣에 對한 認識을 새롭게 해주는 契機를 마련한다면 產業復興과 文化向上의 土臺構築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6 >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는 어느 分野에서나 適用되는 말이지만 特히 우리 電氣界에는 只今 飛躍的인 電力開發, 急速한 技術向上 等 不可避한 民族的 課題가 試謀되어 있으니만큼 우리를 全體 電氣人の 大同團結과 奉仕만이 이를 墓當하고 打開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 \* \* \*

## 電氣協會誌의

健實한 發展에는  
會員 여러분의  
끊임없는 支援이  
要請됩니다.

\* \* \* \* \*

社團法人

## 大韓電氣協會